

타임사 대 힐 사건
Time, Inc. v. Hill
385 U.S. 374 (1967)

타임사 대 힐의 가족들 간에 발생한 소송사건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사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헌법에 명시된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해석상의 개념차이를 좁히게 되었고 미연방대법원이 다룬 최초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임스 힐(James Hill) 가족들은 화이트머쉬 교외에 있는 필라델피아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2년 9월 11일 3명의 탈옥수들이 그의 가정에 침입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탈옥수들은 힐을 비롯해 부인과 5명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고 19시간 동안이나 인질극을 벌임으로써 뉴스를 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힐 가족에 관한 소식은 오랫동안 보도되었고 3명의 탈옥수 중에서 2명이 경찰관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그 후 1953년에는 랜덤 하우스 출판사가 힐 가족들을 묘사한 조셉 헤이스의 소설 『절망의 시간』이란 책을 발행하고 후에 이 소설은 연극과 영화로까지 상영되었다. 이 소설이 1955년 연극으로 공연되었을 때 라이프 지를 『실제의 범죄가 천박한 연극을 만들어냈다』는 제하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보도한 바 있다.

「3년전 전미국인들은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제임스 힐 가족들이 3명의 탈옥수들로 인해 절망적인 고통을 당한 일을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체험을 담은 조셉 헤이스의 소설 「절망의 시간」도 읽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헤이스의 소설을 각색한 브로드웨이의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로드웨이의 연극은 로버트 몬트거머리가 연출을 맡았고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극은 힐의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이프 지는 또한 기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 사진은 힐의 아들이 탈옥수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야수같은 범인』이란 제목이 붙여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사랑스런 딸』이란 제목이 붙은 것이었는데 탈옥수의 손을 비틀고 총을 뺏으려는 딸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이 사진들은 물론 연극무대에 오른 배우의 연극장면을 찍은 것들이었다.

라이프 지의 이와 같은 기사와 사진보도에 대해 힐은 뉴욕 주의 시민법에 의거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뉴욕 주의 시민법 제 50조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람이나 상점, 기업인의 이름과 사진 등의 관련사항을 광고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뉴욕 주법은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제소할 수 있고,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힐은 라이프지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은

의도적인 왜곡과 비사실적 묘사로 보도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혐의 제소에 대해 타임 사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잡지에 게재된 기사는 합법적인 뉴스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잡지가 발행될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힐의 가족에 대해 알고자 했던 공공 관심사였던 것이다. 더구나 악의나 고의성을 갖고 왜곡하여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양식을 바탕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또한 기사내용도 힐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다룬 1심은, 힐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타임 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기사로 인한 힐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또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탈옥수에게도 이 기사로 인한 나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임 사는 5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만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했다. 그러나 타임 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뉴욕 대법원 항소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유없다고 보고, 단지 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과, 라이프 지의 보도가 단순한 뉴스전파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공공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여 소설화 한 부분은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보상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재심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재심은 3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본 사건이 미연방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언론과 출판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우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사실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브레난 재판관은 최근의 뉴욕 항소심 결정을 예로 들고 뉴욕 시민법은 뉴스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보도할 때 사실은 면책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힐이 실제로 인질 경험이 있는 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보다는 뉴스가치가 앞서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브레난 재판관은 이 사건을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례처럼 단순한 명예훼손사건으로 다루려고 하였다. 브레난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도대상이 될만한 소재나 사실에 관해 소설화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사실왜곡의 부분을 증명하거나, 기사가 사실과 달리 무분별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한지는 분명치 않다.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에 관한 사건은……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헌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성에 관한 명예훼손들은 언급이 잘못되거나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소홀로 발생하는 모욕이 증명되기 전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뉴욕 주법과 언론 · 출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가 서로 다르다고 해석한다』.

두 번째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뉴욕 주법의 문구대로 라이프 지의 기사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로서, 합법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인물에 관해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란은 이 사건을 처음에 다루었던 뉴욕 대법원의 버나드 보테인 재판관에 의해 처음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타임 사가 뉴욕 시민법 제 51 조를 위반한 것은 라이프지의 발행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뉴스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을 작성하여 공표했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무시하고 비실제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보도했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였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진정한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고,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는 발행부수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고 있다」 라이프 지의 기사가 합법적인 기사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설화된 오락물이라는 하급법원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브레만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라이프 지에 게재된 기사의 주제는 실제적인 사건과 관련된 연극공연에서 취재된 것이며 ……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오락을 제공하는 일 사이의 구분은 명백하며 …… 소설을 쓴 헤이스는 힐 가족의 체험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과 연극대본으로 썼을 뿐이며…… 책과 잡지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판매되었으나 수정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저해되는 행위는 아니었다』

브레만 재판관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는 언론의 사회에 대한 가치를 더욱 확대해석하여 존중하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신이 타인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문명화 된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노출의 위험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연적 사건일 뿐이다…… 잘못된 기사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만일 언론이 존속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숨쉴 곳」을 가져야 한다면 보호되어야 한다…… 만일 언론이 기와 관련된 개인적 이름이나 사진, 특히 명예훼손적인 사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확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불가능한 짐을 지고 있다면 자유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언론의 봉사에 대해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브레만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민주적 정치체제와 개방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블랙과 더글라스 재판관은 브레만 재판관이 언론의 자유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일침을 가하였다. 특히 블랙 재판관은 브레만 재판관이 설리반 사건을 선례로 적용한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악의가 있는 단어들과 특별히 사실을 왜곡한 무분별한 단어들은 절대로 수정헌법 제 1 조의 사항들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정한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더글라스 재판관은 타임사 대 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논의와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각하를 하고 힐의 가족들이 취한 행위에 대해 『그것은 완전히 시민 자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수정헌법 제 1 조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라이프 지가 왜곡보도한 사항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 결과가 두렵다」고 하였다.

또한 아베 포르타스 재판관도 수정헌법 제 1 조가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당법정은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연장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규칙적용이 확대적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수정헌법 제 1 조의 특별보호부분은 무분별하게 개인의 권리들이 침해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주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 의사에 따라 미연방대법원은 결정을 보기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은 7 명의 재판관 중에서 5 명의 재판관이 라이프 지의 입장에 찬성하는 표를 던짐으로써 뉴욕 건법원 결정을 파기시켰다. 그러나 설리반 규칙의 적용을 주장한 브레난 재판관의 입장에 동조한 사람은 포터 스튜어트와 바이론 · 화이트뿐이고 블랙과 더글라스 재판관은 다른 이유에서 표결을 했었다.